

「담양군의회 스토킹 예방지침」 제정안 행정예고(안)

「담양군의회 스토킹 예방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8일

담 양 군 의 회 의 장



1. 제정이유

- 2023년 7월 시행된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, 조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제정내용

- 제정목적, 적용범위 및 정의(안 제1조~제3조)
- 의장, 상급자, 소속 직원의 책무(안 제4조~제6조)
- 고충상담창구,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운영(안 제7조~제8조)
- 예방교육, 고충상담 신청 등(안 제9조~제10조)
-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, 조사중지, 조사결과의 보고(안 제11조~제14조)
-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,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구성(안 제15조~제17조)
- 위원 수당, 징계, 재발방지조치 등(안 제18조~제22조)

3. 제정규정안 : 붙임

4. 행정예고기간 : 2025. 12. 18. ~ 2026. 1. 7.(20일간)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6년 1월 7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방문, 팩스, 우편(의견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전화번호·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라. 제출기관 : 담양군의회의회장(의회사무과)

- 주 소 :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(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)

- 전화번호 : (061)380-3531 FAX : (061)380-3590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

2. 제출자

성명(명칭)

주 소

3. 의 건

4. 기 타

행정절차법 제44조(의견제출 및 처리) 및 제47조(예고방법 등)의 규정에 의하여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담양군의회의회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